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11. 4.
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10월 14일

나. 발 의 자: 신홍식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8일

라. 상정일자: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11. 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신홍식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일과 가정의 양립과 저출산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특별휴가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수형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과 저출산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8조제3항제2호에서는 의장이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,
 - 같은 항 제7호에서는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10일의 범위 내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,
 - 같은 항 제8호에서는 공무원이 정·난관 복원 수술을 위해서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검토 결과
 - 본 안건을 통해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의 주요 내용은 ▲특별휴가 부여일수 5일→10일 확대 ▲남성공무원 임신검진동행휴가 10일 휴가 부여 ▲정·난관 복원 수술 3일 휴가 부여로 볼 수 있음.
 -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여성공무원에 한정하여 임신기간 중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예비 부모인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검진을 위해 병원에 동행할 시 한정된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. 따라서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일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됨.
 - 다음으로, 공무원의 정·난관 복원 수술 3일 휴가 신설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,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 - 결과적으로, 특별휴가의 부여는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본 일부개정의 신설 조항은 상

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. 아울러 출산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했던 휴가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봄. 다만 대직하는 직원에게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지 않게 사용함으로써 특별휴가 취지가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흥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1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10. .

발의자: 신흥식, 이규선, 양송이
남완현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일과 가정의 양립과 저출산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특별휴가(안 제8조)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 없음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2호 중 “5일”을 “10일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.
8. 공무원은 정·난관 복원 수술을 위해 3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대상, 기준, 방법 등 휴가 부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특별휴가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 7조의7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특별휴가는 각 호와 같으며,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특별휴가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되,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.</p> <p>3. ~ 6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 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8조(특별휴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10 일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.</u></p> <p>8. <u>공무원은 정·난관 복원 수</u></p>

술을 위해 3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대상, 기준, 방법 등 휴가 부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